

◆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근로소득 원천징수

- ▶ 원천징수인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수 기준)에 의해 산정
-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납부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합계액이 종합소득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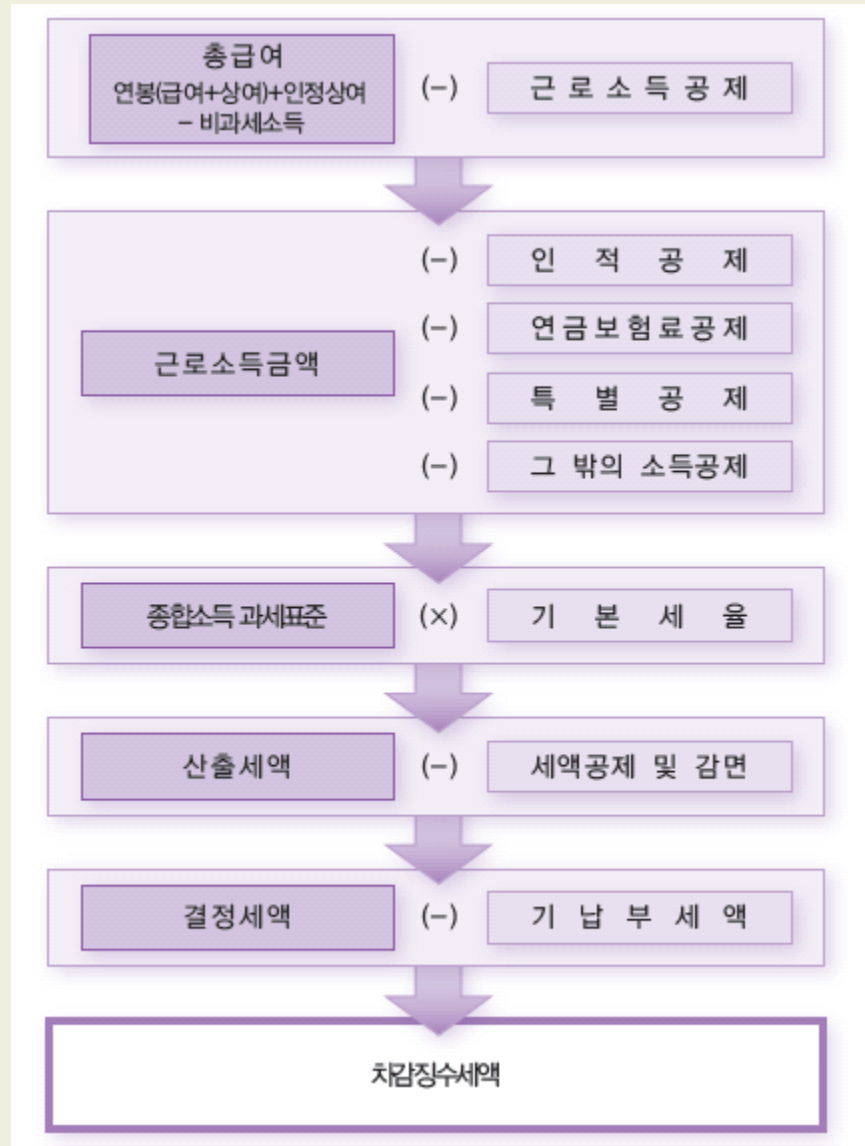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일부분 예시)



(단위: 원)

월급여액(천원)[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 가족의수											
		1		2		3		4		5		6	
		이상	미만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일반	다자녀
2,600	2,610	58,670	45,540	24,280	22,530	19,030	17,800	15,550	14,430	12,180	11,050		
2,610	2,620	59,540	46,410	24,620	22,870	19,370	18,020	15,770	14,640	12,390	11,270		
2,620	2,630	60,410	47,290	24,950	23,200	19,700	18,240	15,990	14,860	12,610	11,490		
2,630	2,640	61,280	48,160	25,290	23,540	20,040	18,450	16,200	15,080	12,830	11,700		

◆ 근로소득 연말정산세액 계산 흐름도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 1,5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 4,500만원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 기본공제: 소득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초생계비 공제로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 소득금액
근로자 본인	거주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1991.1.1 이후 출생)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100만원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

구분	추가공제의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941.12.31 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연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 아동(2005.1.1 이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	1인당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 대상 자녀수 2인 100만원, 3인 300만원 4인 500만원, 5인 7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 등 근로자 부담분 전액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공제)

◆ 특별공제

- ▶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로서, 의료비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시 추가로 공제
- ▶ 교육비공제: 취학전아동(1인당 연300만원), 초중고(1인당 연300만원), 대학생(1인당9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전액) 공제
-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합하여 연300만원 한도
- ▶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100만원을 표준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연금저축공제: 불입액의 100% 공제(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공제)
- ▶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불입액의 40% 공제(주택자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간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직불 및 선불카드는 25%) 공제(공제한도: 연 300만원 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종합소득관련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세액은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공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지출한 당해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합니다.

- 기부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 11. 1~1997. 12. 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 12. 31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주택취득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합니다.